

사천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07 - 제44호
----------	-------------

제출연월일 2007. 6. 7.
제 출 자 사 천 시 장

1. 의결주문

사천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결원중인 기능직 정원을 일반직 정원으로 전환하여 정원의 효율적 관리와 지방행정혁신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한시기구로 설치 운영중인 혁신전담기구의 한시정원 존속기한을 연장 운영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결원중인 기능직 정원의 일반직 전환 (안 별표)

- 총 정원 : 변동 없음(856명)
- 일반직 정원 677명 ⇒ 679명(증 2명)
- 기능직 정원 134명 ⇒ 132명(감 2명)
 - 기능직 2명(8급 1명, 9급 1명) ⇒ 일반직 2명(9급 1명)

나. 존속기한 연장(안 부칙 <2001. 9. 15> 제2항제2호)

- 혁신전담 기구인력 : 5명(6급 2명, 7급 2명, 8급 1명)
- 존속기한 : 2007년 6월 30일 ⇒ 2008년 6월 30일까지

4. 주요 토의과제 : 없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따로 붙임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기획감사담당관

라.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 붙임

2) 입법예고 : 해당 없음

3) 규제심사 : 해당 없음

사천시 조례 호

사천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천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본청, 의회사무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 등 정원관리기관별로 두는 직급별 정원은 별표와 같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사천시 조례 제479호 『사천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중 개정조례 부칙 제2항제 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5명(6급 2명, 7급 2명, 8급 1명)은 2008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정원관리기관별 · 직급별 정원표 (제3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 계	본 청	의 회 사무국	직속기관	사업소	읍	면	동
총 합계	856	439	16	132	74	22	102	71
정무직 합계	1	1						
단체장(시장)	1	1						
일반직 합계	679	364	10	84	47	20	90	64
4급	6	3	1	2				
5급	45	19	2	6	4	1	7	6
6급	176	96	3	20	12	5	28	12
7급	211	110	1	34	15	6	21	24
8급	163	94	3	20	12	4	15	15
9급	78	42		2	4	4	19	7
별정직 합계	15	1		14				
6급상당	12	1		11				
7급상당	3			3				
지도직 합계	29			29				
지도관								
지도사	29			29				
기능직 합계	132	73	6	5	27	2	12	7
6급	5	5						
7급	14	11		1	2			
8급	23	15	2		5	1		
9급	50	24	4	4	12		6	
10급	40	18			8	1	6	7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정원관리기관별·직급별정원) 별표중 총합계란중 총계 856, 본청 439 일반직 합계란중 총계 677, 본청 362 9급중 총계 76, 본청 40 기능직 합계란중 총계 134, 본청 75 8급중 총계 24, 본청 16 9급중 총계 51, 본청 25</p> <p>부 칙 <2001. 9. 15> ②(한시정원) 집행기관의 정원중 한시정원 존속기한을 다음과 같이 한다.</p> <p>2. 5명(6급 2명, 7급 2명, 8급 1명)은 <u>2007년 6월 30일까지</u>로 한다.</p>	<p>제3조(정원관리기관별·직급별정원) 별표중 총합계란중 총계 856, 본청 439 일반직 합계란중 총계 679, 본청 364 9급중 총계 78, 본청 42 기능직 합계란중 총계 132, 본청 73 8급중 총계 23, 본청 15 9급중 총계 50, 본청 24</p> <p>부 칙 <2001. 9. 15> ②(한시정원)----- -----</p> <p>2. 5명(6급 2명, 7급 2명, 8급 1명)은 <u>2008년 6월 30일까지</u>로 한다.</p>

관계법령 발취

【지방자치법】

第103條 (地方自治團體의 公務員) ①地方自治團體에는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經費로써 부담하는 地方公務員을 두되, 그 定員은 大統領令이 정한 基準에 따라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로 정한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규정】

제19조(한시정원) ① ~ ⑤ 생략

⑥ 한시정원의 정수는 당해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직급별 정원은 당해 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21조(정원의 규정) 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5. (생략)

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원의 총수의 범위안에서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원관리기관별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지방자치단체 혁신전담기구(한시정원)존속기한연장】

- 행정자치부 지방혁신전략팀-152(2007. 2. 22)호, 지방조직발전팀 -210(2007. 2. 26)호 및 경남도 행정과-4012(2007. 3. 21)호와 관련임.
- 존속기한연장
 - 당초 : 2007. 6. 30 → 변경 : 2008. 6. 30까지